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조례 제18조 관련)
 (단위 : 퍼센트)

용도별 구분	주 거 용	비 고
특례건축 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	80
특례제한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	7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	60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조·제8조의2·제10조·제11조
 ·제14조제2항·제17조·제18조(별표)·제19조
 ·제21조·제21조의2·제25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97

제출년월일 : 1999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교통위원회위원장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하였던
 교통순시원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
 행령 제69조의 규정이 1997.12.6.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1997.
 12.6. 삭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
 인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

1999. 12. 28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청원일자 및 청원자 : 1999년 12월 22일, 박
 병진외 216명
 ○소개의원 : 김성환의원(국민회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22일
 ○상정일자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1999년 12월 22일) 의결·상정

2.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5년이상 방치되어 있던 부국연
 립주택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재
 건축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부내역을 확

인한바, 15층아파트와 10층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길 없어 '97.7월 박병진외 38인이 노원구청에 진정하였으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변경 불가함을 회신받은 바 있음.

○상계 부국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상계동 1098번지와 1108번지 일대는 앞서 건축된 두산 주공아파트 사이에 끼어 일조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고립무원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으며, 동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보면 16평형 95세대, 24평 20세대를 건축하겠다는 계획인바, 이 아파트는 동부간선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고층으로 건축할 경우 아무리 방음시설을 잘한다 해도 소음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이 명확함.

○또한 현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와 소형평수의 아파트가 어느 구보다 많아 공릉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축시에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제출한 바 있는데, 또다시 민간업자도 아닌 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16평형이 대다수인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 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만 치중하여 결정된 졸속행정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청원인 일동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련부지를 인근에 공원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요망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음에도 진출입로가 없어 최소한 10m이상 도로가 개설되도록 검토해 줄 것과 이 청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국아파트의 공사가 착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3. 소개의원 요지(김성환의원)

○이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96번지 일원의 부국연립 부지를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부국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당초 주민들은 재건축이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으로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가 지어진다

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나빠짐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 부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함.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본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08-1 박병진의 216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계부국 재건축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근 상계동 1098번지 일대는 먼저 건축된 두산 주공아파트 사이에 끼어 일조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고립무원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으며, 동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보면 16평형 95세대, 24평형 20세대를 건축하겠다는 계획인바, 이 아파트는 동부간선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 고층으로 건축할 경우 방음시설을 잘 한다 해도 소음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인근 주민들이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m이상 도로의 개설을 검토하되, 본 청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청원으로

○상계부국아파트는 아파트 3개동(지상10층, 15층, 지하2층) 16평 95세대, 24평 20세대로서 분양(공급)면적기준으로는 16평은 24평으로, 224평은 34평으로 총 115세대를 설계완료하여 '99.3.25일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99.10.6일 일반 경쟁입찰에 의거 (주)영동건설외 3개사가 동 공사의 계약자로 선정되어 '99.12.22일 현재 아파트 부지위에 있는 기존 부국연립주택(6개동)을 철거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데

○동부간선도로와 연결해 있어 소음공해가 극심하고 분양여부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감안 소음감소책으로 발코니에 알루미늄 샷시 설치 및 16m/m 복층유리로 시공토록 설계하였다는 의견이며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음에도 진출입로가 없어 최소한 10m이상 도로가 개설되도록 검토해 달라는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1단지는 동일로부터 상계부국아파트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현행 10m로 개설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300세대미만 주택단지진출입로는 폭 6m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법규에 의거 동부고속화도로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폭6m)를 노원구청 위('96.7.15)·수탁('96.7.15 계약체결)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전체공정중 6.5%를 진행중에 있으며, 2단지는 동부고속화도로로부터 진출입이 가능한 폭 12m도로가 기존에 개설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비록 부곡아파트 재건축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지만 만약 고층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입주인과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우려가 많고, 동부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소음피해가 심각하며, 지역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해 분양가능성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설계되어 현재(공정률 1.7%) 공사진행중인 점, 공원변경에 따른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소위원회 심사내용 : 소위원회 구성없음.
- 8. 심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건 서

○청원명 : 부곡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인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안전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425	'99.10.11	'99.10.12	제17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99.12.17)	원안동의
458	'99.11.13	'99.11.16	제17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99.12.17)	원안동의
459	'99.11.13	'99.11.16	제17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99.12.17)	원안동의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

본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96번지 일원의 상계부곡연립주택 부지에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부곡아파트에 대해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먼저 건축된 두산주공아파트 사이에 끼어 일조와 통풍이 제대로 안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예상되고,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공해가 심해서 일반분양이 안 될 것이니 재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진출입도로 도로폭을 10m이상 확장하며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으로, 상계부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설계하여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건축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만약 부곡재건축아파트가 15층의 고층으로 건축될 경우 입주인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우려가 있고, 동부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소음피해가 심각하며, 지역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분양가능성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의 취지는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동 청원 내용과 같이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99. 12.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결(처리)건수 : 7건(원안동의 6건, 수정동의 1건)